

보도참고자료

THAI THEOUT!

보도시점

배포 시

배포

2024. 10. 2.(수)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(10.2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일 제17차 회의에서, **회계처리기준을 위반**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㈜**티와이엠 등 3개사**에 대하여 **감사인지정**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또한,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**회계법인**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- ** 비상장사인 라헨느리조트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감리위원회)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.
- 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태현수 (02-2100-2690)
<총괄>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공동> 금융감독원 - 회계감리1국 _	책임자	국 장	신규종 (02-3145-7700)
<공동>		담당자	팀 장	강대민 (02-3145-7725)
		담당자	팀 장	이성진 (02-3145-7710)
*공동>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자 심사감리본부 담당자	한국공인회계사회	책임자	본부장	조점호 (02-3149-0353)
	팀 장	심수나 (02-3149-0368)		



다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조사・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4.10.2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(단위 · 맥단원) 조 치
 ㈜티와이엠	【회사】	회 사 :
결산기 : 2022.6.30. 2022.9.30. 2022.12.31.	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('22년 반기 64,017백만원, '22년 3분기 49,551백만원, '22년 온기 31,380백만원)	※ 회사 및 회사관계사에 대한 과징금 부괴는
유기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 : 농업 및 임업용	-회사는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하여,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	
기계 제조업		- 담당임원 해임권고 - 시정요구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럭슬㈜	【회사】	회 사 :
2019.3.31. 2019.6.30. 2019.9.30. 코스닥 상장법인	 ① 미수금 등 허위계상 ('18년 ~'19년 3분기 10,000백만원) - 회사는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함 ② 선급금 등 허위계상 ('19년 1분기 200백만원, '19년 반기 1,230백만원, '19년 3분기 3,630백만원) -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, 물품공급이나 자금대여 거래로 위장 후 선급금 등으로 허위계상함 	증권 증권의 사모발행(채권자 출자전환 포함),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- 과징 금 ※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위기대 드	지 적 사 항	(난위 : 맥만원) 조 치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<u> </u>
럭슬㈜	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	인덕회계법인 :
	①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8년 10,000백만원) - 감사인은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- 과징금 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손해 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% - 럭슬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1인 : - 럭슬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- 주권상장회사 및
		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6시간 공인회계사 1인: - 럭슬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2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<u>조</u> 치
라헨느리조트㈜	[회사]	회 사 :
-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회 사: - 과징금 ※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라헨느리조트㈜	【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】	삼도회계법인 :
	①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7년 7,056백만원, '18년 8,258백만원, '19년 9,643백만원, '20년 7,244백만원, '21년 8,630백만원)	- 과징금 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
	- 감사인은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	②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7년~'19년 6,950백만원, '20년~'21년 6,124백만원)	- 라헨느리조트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
	- 감사인은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	
	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감사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회사 및
		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		- 직무연수 8시간
		공인회계사 1인 :
		- 라헨느리조트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		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· 코넥스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
		- 직무연수 6시간

_______ 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